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연월일	2021. 12.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2022. 1. 13. 字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
- 배제 내용(휴직, 파견,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구미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보건·휴양·안전·후생·공동체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와 구미시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월할(月割)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月割)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

⑤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할계산 시 기관 간 이 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추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후생복지사업

제14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실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

소 등의 확보·운영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가. 소속 공무원

나.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단, 근속연수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나. 명예퇴직 예정자

9. 소속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0.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4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1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구미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미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